

승진시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제67조 관련)

(단위: %)

경과별 계급별	해양·수사·정보통신·특임경과			항공경과	
	시험 과목		배점 비율	시험 과목	배점 비율
경정	제1차 시험	행정법	30	행정법	30
		국제법	30	국제법	30
	제2차 시험	행정학	40	행정학	40
경감	행정학		35	행정학	35
	해양법(해사법규 포함)		35	해양법(해사법규 포함)	35
	해양경찰 실무(Ⅱ, Ⅲ, Ⅳ)		30	항공법규	30
경위	형법		35	형법	35
	형사소송법		35	형사소송법	35
	해양경찰실무(Ⅱ, Ⅲ, Ⅳ)		30	항공법규	30
	중 2과목				
경사	형법		35	형법	35
	해사법규		35	해사법규	35
	해양경찰실무(Ⅱ, Ⅲ, Ⅳ)		30	항공법규	30
	중 1과목				
경장	형사소송법		35	형사소송법	35
	해사법규		35	해사법규	35
	해양경찰실무(Ⅰ)		30	항공법규	30

비고

1. 해양경찰실무(Ⅰ)는 합정실무(5급 향해사, 5급 기관사 수준), 파출소실무(「경찰관 직무집행법」, 「경범죄 처벌법」, 「검사의 사범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범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운영지원·감사·대변인실무로, 해양경찰실무(Ⅱ)는 관리운영으로, 해양경찰실무(Ⅲ)는 경비안전으로, 해양경찰실무(Ⅳ)는 수사정보로 한다.
2. 행정학은 기초이론, 정책론, 조직론 및 인사·재무·환류행정으로 한다.
3. 행정법은 행정법 총론 전체와 행정법 각론 중 경찰행정법 분야로 한다.
4. 해사법규는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해양환경관리법」 등 해상에서의 항행안전이나 질서유지 및 해양오염 방제(防除)에 관한 법률로서 승진시험 공고 시에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법률로 한다.
5. 항공법규는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으로 한다.